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91 호 2017. 10. 25(수)

고 시

제2017 - 105호	도로명 주소 고시	1
제2017 - 106호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4
제2017 - 107호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4
제2017 - 1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9
제2017 - 110호	남해군계획시설(방재시설:오동저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제2017 - 11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1

공 고

제2017 - 974호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 공고	26
제2017 - 976호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3
제2017 - 992호	『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36
제2017 - 993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1
제2017 - 997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7
제2017 - 100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64
제2017 - 100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	65
제2017 - 1018호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8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10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375-12 외 3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 여

연번	종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용소리 산141-2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남서대로 375-1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이통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국도 77호선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75-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21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이통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국도 77호선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917-4, 920-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2956-228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이통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국도 77호선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917-3, 920-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2956-230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이통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국도 77호선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70-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71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돌다리 564-4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999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돌다리 377-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486-1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349-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21-20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624-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362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초음리 1919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강진민로 462	20090427	남해본성과 장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민과 집현 해안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무원리 170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남음로 13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남음 뒷산이 남조곶지점 생겨 남화산이라 하였는데 산 밑으로 사들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게 되자 남음이라 불렀다고 함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07-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양운로 37-6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재갈산이라 불리는 양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491-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7-6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1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491-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20-26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49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20-28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49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320-30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0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591	20090427	상주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원효대사의 전설에서 유래하였으며, 상주면은 모래비치가 위치한 길임
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039-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회로 108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회로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1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72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회로 424-39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회로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20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23-4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양화대로 324-2	20090427	평정리를 이용, 마을 주변에 버드나무 숲(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대성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2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11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 53-11	20090427	행정구역명 이용, 옛 지명의 우물개의 한자표기임
22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영지리 1802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죽향로 193	20090427	남해의 특산물인 죽향현 멸치가 생산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임을 반영
2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산리 116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향남로 228	20090427	독립지사 장남 윤병준선생을 기리기 위한, 장남은 설천 문의에서 출생하여 대동청년단에 가입, 독립회복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노랑군현에 그의 송공비가 세워져 있음
24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811-31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132-15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740-1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176번길 48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740-6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176번길 48-1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천리 649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176번길 72-1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금송리 75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1503번길 33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양지리 1075, 1076-1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봉화로 531번길 25-1	20090427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백리 35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상주로 364번길 40-15	20090427	상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연번	종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용소리 산141-2	경상남도 남해군 이통면 남서대로 64-1	2017.9.27	신축에 의한 간축을 명칭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75-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양운로 21번길 50-12	2017.9.1	신축에 의한 간축을 명칭
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491-2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림로 68번길 4	2017.9.27	신축에 의한 간축을 명칭
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491-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림로 68번길 6	2017.9.21	신축에 의한 간축을 명칭

남해군 고시 제2017-106호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남해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남 해 군 수

수렵장 설정고시

■수렵기간 : 2017. 11. 1 ~ 2018. 1. 31

*수렵금지기간 : 2017.12.31~2018.1.1(신정)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남해군 수렵장
-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승인인원 : 300명
- 총 면 적 : 357.61km²(35,761ha)
 - 수렵장 설정면적 : 144.96km²(14,496ha)
 - 수렵장 제외면적 : 212.65km²(21,265ha)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 30.30km²
- 공원구역 : 77.42km²
- 군사시설보호구역 : 1km²
- 도시지역 : 11.71km²
- 문화재보호구역 : 0.43km²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2.27km²
- 기타지역 : 89.52km²

총기보관 장소 현황

관할지구대	소재지	전화번호
중앙지구대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30	055-863-2112
창선파출소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99	055-867-1112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입·출고시간 : 남해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055)
남해군청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860-3254
남해읍사무소	남해읍 화전로 81	860-8034
이동면사무소	이동면 무림로 76	860-8084
상주면사무소	상주면 남해대로 705	860-8104
삼동면사무소	삼동면 동부대로 1876번길 12	860-8183
미조면사무소	미조면 미송로 60	860-8234
남면사무소	남면 남서대로 778	860-8254
서면사무소	서면 스포츠로 676	860-8333
고현면사무소	고현면 탐동로 42	860-8363
설천면사무소	설천면 설천로 695	860-8432
창선면사무소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	860-8455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엽기 개시일부터 15일 경과후에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단위 : 천원)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기간별		기간별(천원)	
			엽기내 (92일)	수용 인원
1종 수렵면허	적 색 포 획 승 인 권		500천원	90명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멧 돼 지 고 라 니 조류 1종	4개(마리) 2개(마리) 20개(마리)	
1종,2종 수렵면허	청 색 포 획 승 인 권		200천원	210명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고 라 니 조류 1종	1개(마리) 35개(마리)	
수 용 인 원 합 계			300명	

- * 조류1종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5종)
- ※ 기타조수류는 확인표지(Tag)를 발급·부착하지 않음
-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7. 9. 19.(화)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7. 9. 28.(목) 18:00까지

■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7. 9. 19.(화)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7. 9. 28.(목) 20: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7. 9. 28일 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엽기 개시일부터 15일 경과후에는 수렵장 사용료를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17-5868-21 (9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남해군 적색)
※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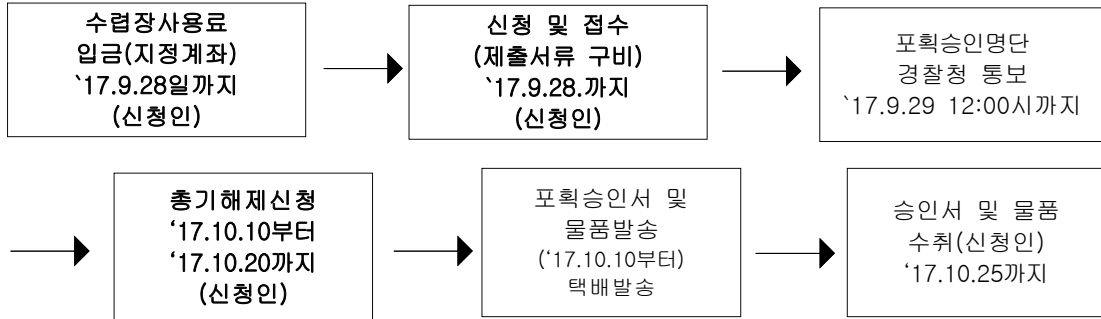
농협 301-0217-5870-81 (21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남해군 청색)
※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포획승인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9. 19일(화) 09:00시부터 2017. 9. 28일(목) 20:00시까지
-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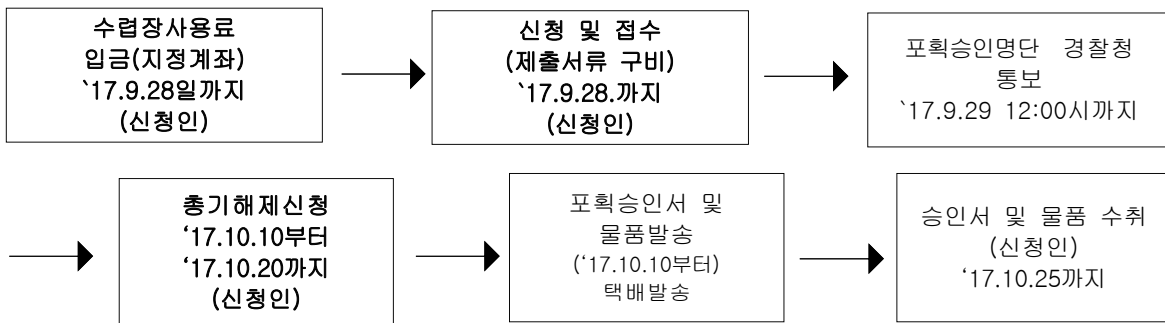
• 포획승인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남해군 홈페이지)

• 접수처

①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55-733-3386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55-733-3396

②연 락 처 : Tel) 055-759-2626 (대표번호)

③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 포획승인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17.10.20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7.10.20(금)까지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7. 9. 29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남해군, 충주시, 의성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기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 따라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75) 또는 남해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일시·장소 등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렵방법 등

-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벌칙 규정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 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얹어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얹어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남해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남해경찰서의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 압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7 - 107호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1. 위 치 : 남해군 남해읍 도시지역내
2.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3.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교통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조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22	7,315	58,000	-	-	-	21	6,921	55,977	1	394	2,023
중로	-	-	-	-	-	-	-	-	-	-	-	-
소로	22	7,315	58,000	-	-	-	21	6,921	55,977	1	394	2,023

남 해 군 공 보

(16) 제 591 호

2017년 10월 25일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4	남해읍 남변리 501-7	남해읍 서변리 4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4	남해읍 남변리 654	남해읍 서변리 4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440	남해읍 북변리 248-12	남해읍 북변리 325-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440	남해읍 북변리 248-12	남해읍 북변리 32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43	남해읍 남변리 399-1	남해읍 남변리 338-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143	남해읍 남변리 399-1	남해읍 남변리 338-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356	남해읍서변리 176-6	남해읍북변리 97-1	일반 도로	-	경고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8	8	국지 도로	356	남해읍서변리 176-6	남해읍북변리 97-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261	남해읍 북변리 285-19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261	남해읍 북변리 285-19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21	남해읍 북변리 96-6	남해읍 북변리 284-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21	남해읍 북변리 89-11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421	남해읍 북변리 96-6	남해읍 북변리 284-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421	남해읍 북변리 96-6	남해읍 북변리 28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363	남해읍 차산리 726-2	남해읍 아산리 177-7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363	남해읍 차산리 726-2	남해읍 아산리 177-7	일반 도로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0월 25일

제 591 호 (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67	남해읍 아산리 177-5	남해읍 아산리 18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8	8	국지 도로	67	남해읍 아산리 177-5	남해읍 아산리 18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10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10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430	남해읍 아산리 334-4	남해읍 북변리 246-24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3	8	국지 도로	430	남해읍 아산리 334-4	남해읍 북변리 246-24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420	남해읍 아산리 355-2	남해읍 아산리 240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5	8	국지 도로	420	남해읍 아산리 355-2	남해읍 아산리 24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913	남해읍 북변리 141-1	남해읍 아산리 173-3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7	8	국지 도로	913	남해읍 북변리 141-1	남해읍 아산리 173-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47	남해읍 아산리 969-3	남해읍 아산리 4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47	남해읍 아산리 969-3	남해읍 아산리 49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44	남해읍 아산리 429-2	남해읍 서변리 352-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44	남해읍 아산리 429-2	남해읍 서변리 35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8	8	국지 도로	94	남해읍 남변리 391-6	남해읍 서변리 19-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8	8	국지 도로	94	남해읍 남변리 391-6	남해읍 서변리 19-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646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646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301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2	8	국지 도로	301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4	남해읍 아산리 173-7	남해읍 북변리 505-3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4	남해읍 아산리 173-7	남해읍 북변리 45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59	남해읍 차산리 766-9	남해읍 아산리 173-10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59	남해읍 차산리 766-9	남해읍 아산리 173-10	일반 도로	-		

남 해 군 공 보

(18) 제 591 호

2017년 10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17	남해읍 북변리 555-4	남해읍 북변리 505-3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17	남해읍 북변리 555-4	남해읍 북변리 454-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94	남해읍 아산리 415-2	남해읍 아산리 493-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394	남해읍 아산리 415-2	남해읍 아산리 493-2	일반 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호선	소로2-1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및 기점 지번 합필로 인한 표기정정
소로2-6호선	소로2-6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7호선	소로2-7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8호선	소로2-8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10호선	소로2-10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12호선	소로2-12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및 기종점 지번 합필로 인한 표기정정
소로2-13호선	소로2-13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17호선	소로2-17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18호선	소로2-18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20호선	소로2-20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23호선	소로2-23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25호선	소로2-25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27호선	소로2-27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32호선	소로2-32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35호선	소로2-35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38호선	소로2-38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39호선	소로2-39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42호선	소로2-42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46호선	소로2-46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및 종점 지번 합필로 인한 표기정정
소로2-47호선	소로2-47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소로2-53호선	소로2-53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및 종점 지번 합필로 인한 표기정정
소로3-2호선	소로3-2호선	○도로모퉁이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모퉁이 변경

남해군 고시 제2017 - 1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다천천)
2. 성 명 : 김 ○ 기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
4. 점용목적 : 진입로
5. 점용위치 :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
6. 점용면적 : 145㎡
7. 점용기간 : 2017. 10. 20. ~ 2022. 10. 19.

남해군 고시 제2017 - 110호

남해군계획시설(방재시설:오동저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오동저수지)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4-3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군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 명 칭: 오동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45,951m²
 - 규 모 : 여수토방수로 개선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주 소: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 성 명: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해당없음
-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 및 상하수도사업소(☎055-860-3324에 비치)】

남해군 고시 제2017 - 111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 개설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

- 1)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 2)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개설공사 : 남해군 남해읍 평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 개설공사
- 2)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개설공사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 개설공사

남 해 군 공 보

(22) 제 591 호

2017년 10월 25일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1)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규 모				결 정		금 회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m)	폭(m)	연장(m)	폭(m)	연장(m)	
중로	3	1	12	12	1,248	12	115	

2)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개설공사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소로	3	3	6	6	288	6	288	

4. 사업시행자

1)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개설공사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1)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2017.4.21. ~ 2018.6.30.

2)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개설공사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2017.5.2. ~ 2018.6.30.

6. 공람기간 :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1]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효자문~들물횃집)개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98-3	대	283	283		남해군	-	
2	“	490	도	6,089	71		기획재정부	-	
3	“	96-9	대	1	1	남해읍 서변리 96-4	하0주	-	
4	“	96-6	대	906	906		남해군	-	
5	“	124-4	대	24	24	남해읍 화전로 45-64	조0옥	근저당권 (남해군산림조합)	
6	“	146-3	대	13	13		남해군	-	
7	“	149-9	대	31	31	남해읍 서변리 149-6	노0남	-	
8	“	146-2	도	7	7	남해읍 서변동 173	정0협	-	
9	“	146-4	도	20	20	남해읍 서변동 146-3	유0조	-	
10	“	149-8	도	45	45	남해읍 서변리 149-6	하0순외 1인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01-5	주택	2층 슬라브	m ²	102	남해읍 망운로21번가길 24-11, 에이동 501호 (임페리얼빌리지)	전0남			
		에어콘		식	1					“
		유선TV		식	1					“
2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24-2	주택	1층슬라브	m ²	90.5	남해읍 화전로 45-64	조0옥			
		보일러실	판넬조판넬	m ²	2					“
		계단	콘크리트	식	1					“
		계단 및 테라스 등	계단2곳 테라스등	식	1					“
		물탱크	FRP	식	2					“
		물탱크	콘크리트	식	1					“
		담장	블럭조	m ²	40					“
		종려나무	R25	주	1					“
3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96-6	창고	블럭스레트	m ²	16	남해읍 화전로 45-38	김0수			
		감나무	100년생	주	2					“
4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49-9	점포(1층)	철근콘크리트조	m ²	28.09	남해읍 서변리 149-6	노0남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조	m ²	28.09					“
		창고(옥상)	블럭함석	m ²	6					“
		계단(난간포함)	콘크리트	식	1					“
		물탱크	FRP	식	1					“
		영업권		식	1					“

[붙임 2] : 도시계획도로(소로3-3호, 남해도서관~휴먼시아)개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읍·리	지번				성 명	주 소	
1	평 리	1208-11	답	59	59	홍0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 1길 33	근저당권 (수곡농협협동조합)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 번	소재지	대상물건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수량	성 명	주 소	
1	평리 1208-11	석류나무	R5H2	16주	홍0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 1길 33	근저당권 (수곡농협협동조합)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974호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명칭 :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에 대한 복구 및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사면붕괴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 나. 공사개요
 - 급경사지 사면정비 L=50.0m, H=5.0~15.0m
 - 계단식 옹벽(L=50m, B=12.6m)
 - 콘크리트 포장(T=15m) : A=408.0㎡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1번지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17. 4. 5.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16억원

9. 공사개요

1) 토 공

- 흙 깎기 : 토사 - 869m³, 발파 - 327m³
- 터 파기 : 토사 - 28m³, 발파 - 75m³
- 되메우기 : 28m³, ○ 노반준비 : 408m³
- 평떼 : 88m³, ○ 표토제거 : 391m³
- 사 토 : 1,293m³ ○ 지장가옥헐기 : 290m³

2) 구조물공

- 계단식옹벽 : 419m
- 영구앵커 : 93공
- 수평배구공(Ø105) : 40공
- 석축쌓기 : 8m

3) 배 수 공

- U형배수로(0.6x0.5) : 18m
- 집수정(0.8x0.8x1.5) : 2개소

4)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15cm) : 408m²
- 보도포장(소형고압블럭) : 85m²

5) 부 대 공

- 기타 : 1식

10.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시 군 비	민 자
계	1,600	800	560	308	
2017년	340	170	51	119	
2018년	1260	630	441	189	

남 해 군 공 보

(28) 제 591 호

2017년 10월 25일

11. 토지세목조서

순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고현면 대사리	780-4	전	192	8	766	김*일
2	”	780-3	대	138	138	786-3	김*춘
3	”	780-10	도	33	33	남치리172	박*실외1인
4	”	780-15	대	141	141	771-3	박*봉
5	”	780-19	임	162	162	771-3	박*봉
6	”	780-1	임	2,149	378	부산사하구신평동 601-4	정*민
7	”	780-9	도	10	10	남치리172	박*실외1인
8	”	780-2	대	221	221	경상남도남해군고현 면대사리780-2	장*규
9	”	780-8	도	7	7	남치리172	박*실외1인
10	”	780-14	대	52	52	경상남도남해군고현 면대사리780-2	정*연
11	”	617-2	도	63	7		남해군
12	”	617-1	임	1,405	107		경상남도(교육감)
합계				4,573	1,264		

12. 토지총괄집계

지목	국유지		사유지		합계	
	필지	편입면적	필지	편입면적	필지	편입면적
전			1	8	1	8
대			4	552	4	552
도	1	7	3	50	4	57
임	1	107	2	540	3	647
계	2	114	10	1,150	12	1,264
구성비(%)	9.02(%)		90.98(%)		100(%)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055-860-3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치도 및 계획중평면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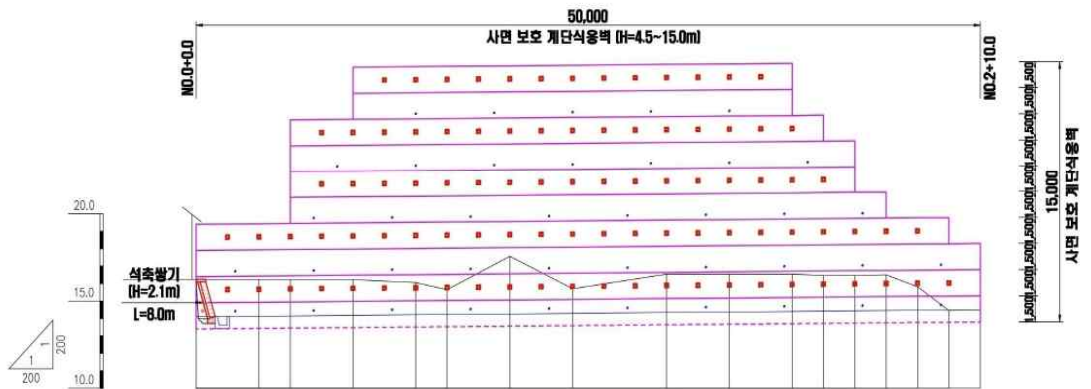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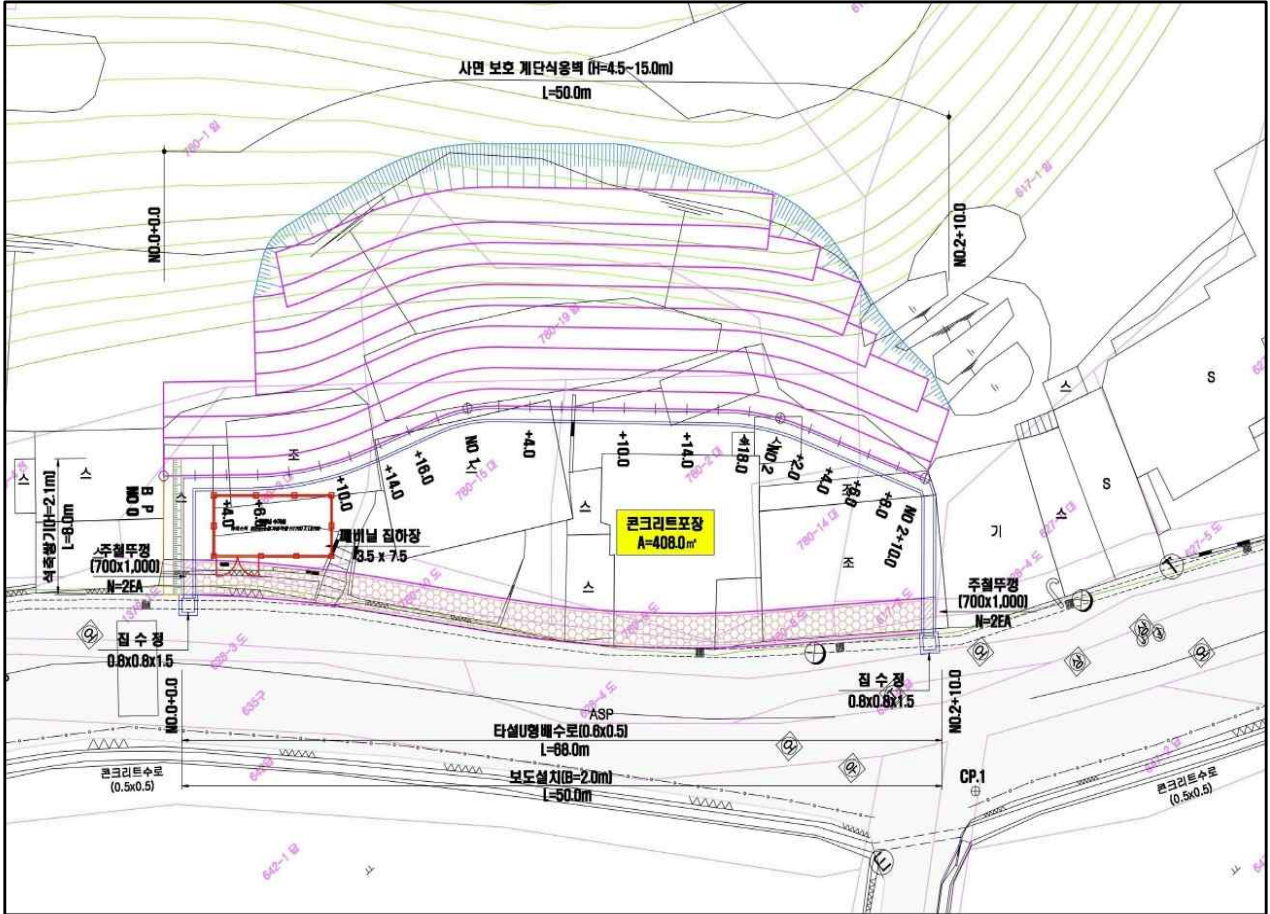
위 치 도



현 황 사 진



현황 계획 중 평면도



S=8.00%
H=0.40L=50.00

구분	점	노	고
기	0.00	14.10	14.10
	4.00	14.10	2.14
	6.00	14.13	2.09
	10.00	14.15	2.07
	14.00	14.18	2.04
	18.00	14.21	1.84
	22.00	14.23	1.41
	26.00	14.26	3.31
	30.00	14.29	1.42
	34.00	14.34	2.20
점	38.00	14.37	2.17
	42.00	14.40	2.14
	46.00	14.42	2.05
	50.00	14.44	2.03
	54.00	14.45	2.06
	58.00	14.47	1.34
	62.00	14.48	-0.03
	66.00	14.50	0.00
	70.00	14.50	0.00
	74.00	14.50	0.00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계획 조례” 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 다만, 숲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숲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를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는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고는 해당 토지의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경계표면의 높이를 기준반지반고로 하며,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해안선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으로 한다.

- ③ 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976호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과 「남해군 계획 조례」 중 발전시설허가 기준 신설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변경 : 『남해군 계획 조례』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나. 남해군 계획조례 조항 정비

-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가목(종전 조례) → 제16조 제1항 제1호 전부 개정(안)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0퍼센터 미만인 경우
 - ⇒ 입목 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헥타르당 70퍼센터 이하로 수정(입목축척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개정)

○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 경사도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 단서 조항 삭제

○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종전조례) ⇒ 전부 개정

다. 발전시설 허가 기준 신설

- 제16조의 2(발전시설 허가 기준) ①항부터 ⑤항까지 허가 기준 마련
 - 주요 기준 신설(안)

- 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호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함
 - 1. 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해안선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에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으로 적용
- ③ 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10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82, 팩스 055-860-373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인허가팀(055-860-308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7 - 992호

『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간 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자연재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삼동면 봉화리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업명 : 『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

4. 시행청 : 경상남도 남해군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0월 25일

제 591 호 (37)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1. 2.(21일간)

6.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1)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o 우편 :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o 팩스 : 055-860-372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설치(예정)장소

구분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계	6개소	6대		
신설	삼동면 봉화리 2156-2번지	1	24시간	회전식
신설	삼동면 봉화리 1276-2번지	1		
신설	삼동면 봉화리 2332-1번지	1		
신설	삼동면 봉화리 1509-21번지	1		
신설	삼동면 봉화리 2555번지	1		
신설	삼동면 봉화리 2508번지	1		

※ 설치 여건에 따라 인근 지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사진대장 참조

남 해 군 공 보

(38) 제 591 호

2017년 10월 25일

[붙임]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2017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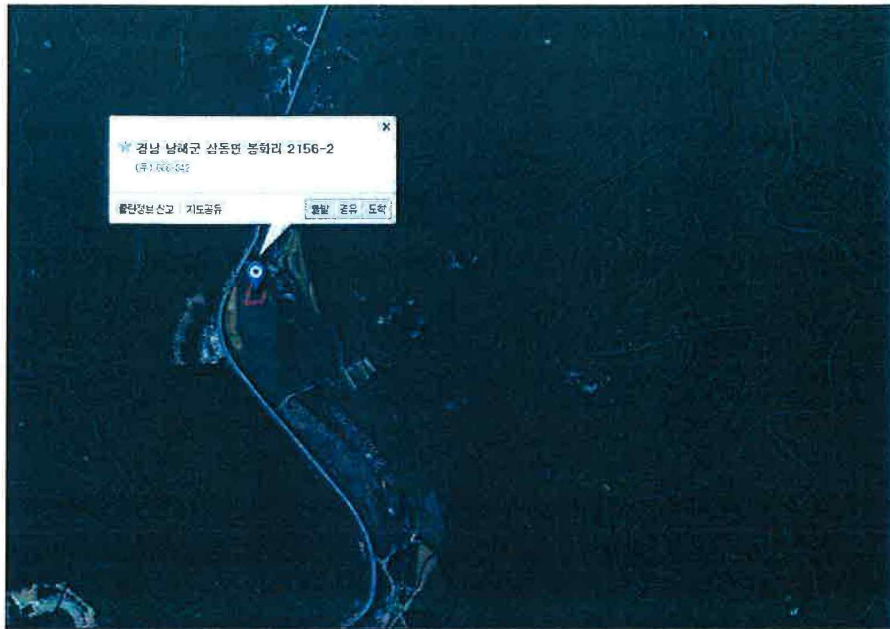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사 진 대 장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지도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	사진설명	현장1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	사진설명	현장1-1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	사진설명	현장1-2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	사진설명	현장1-3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지도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호리 1276-2	사진설명	현장2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호리 1276-2	사진설명	현장2-1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호리 1276-2	사진설명	현장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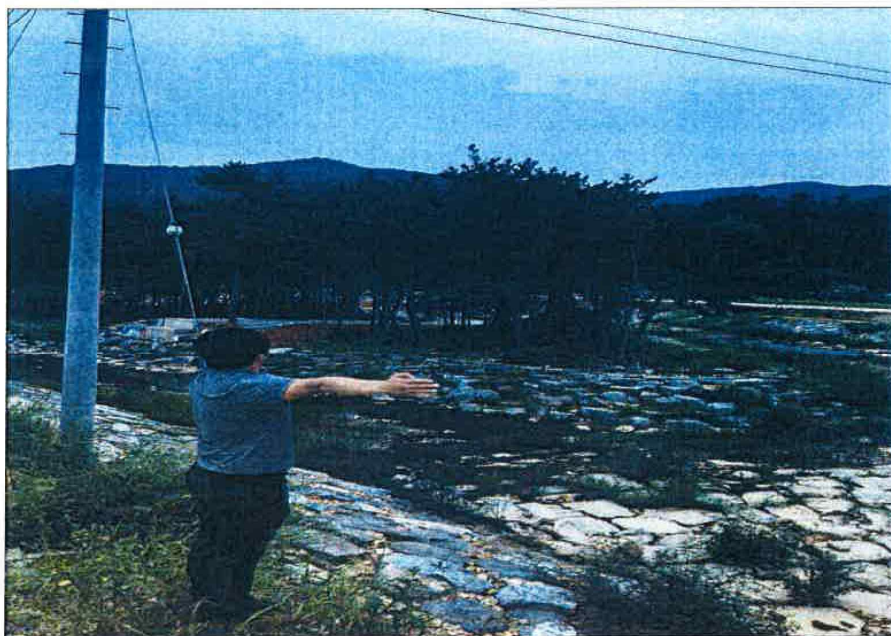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호리 1276-2	사진설명	현장2-3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지도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32-1	사진설명	현장3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32-1	사진설명	현장3-1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32-1	사진설명	현장3-2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332-1	사진설명	현장3-3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지도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509-21	사진설명	현장4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509-21	사진설명	현장4-1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509-21	사진설명	현장4-2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509-21	사진설명	현장4-3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지도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55번지	사진설명	현장5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55번지	사진설명	현장5-1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55번지	사진설명	현장5-2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55번지	사진설명	현장5-3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지도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08번지	사진설명	현장6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08번지	사진설명	현장6-1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08번지	사진설명	현장6-2



공 사 명	화천 고향의강 조성 CCTV 설치공사	구 분	현장1
공종,위치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508번지	사진설명	현장6-3



남해군 공고 제2017 - 993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 추가 : 무공수훈자 유족
- 나.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지급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11월 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4,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공수훈자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2.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3.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월 3만원 지급
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을 “제4조에 따른 각 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구 분	<input type="checkbox"/> 6.25 참전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월남전 참전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전몰군경 유족 <input type="checkbox"/> 무공수훈자 유족		
	성 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성 별	
	주 소	우편번호 : □□□□□□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div>		
예금 계좌	지급기관 (예금계좌)		예금주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본문생략></p>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그 밖에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u>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8조(수당 지급중단) -----“<u>참전명예수당</u>”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3.“무공수훈자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를 말한다.</p>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u>에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u> 2. <u>월남전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u> 3. <u>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월 3만원 지급</u> 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5. 그 밖에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u>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8조(수당 지급중단)-----<u>“제4조에 따른 각 수당”</u>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p>

남해군 공고 제2017 - 997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제정에 따라 심의기구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하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여 법령과 상이한 부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명칭 수정(안 제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 「수산업법」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수정

나. 지원사업의 심의기구 수정(안 제14조)

- 지원사업의 심의기구를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

다. 심의기구 수정에 따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제4장,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제4장 농어업·농어촌정책위원회
- 제17조(위원회 설치), 제18조(구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분과 위원회), 제21조(수당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11월 0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1). 주 소 :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6, 팩스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55-860-3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목을 신설한다.

11.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제8조제7호 중 “열위”를 “약화”로 한다.

제14조 중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장과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뜻) <본문 생략></p> <p>1. “농업”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p> <p>2. “농업인”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p> <p>3. “농촌”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4. “어업”이라 「<u>수산업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p> <p>5. “어업인”이라 「<u>수산업법</u>」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p> <p>11. “생산자단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p> <p>가. <신 설></p> <p>나. <신 설></p>	<p>제2조(용어의 뜻) <현행과 같음></p> <p>1.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p> <p>2.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 -----.</p> <p>3.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p> <p>4.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1호가목 -----.</p> <p>5.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u>호</u>----- -----.</p> <p>11.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p> <p>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p> <p>나.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p>
<p>제8조(농어업 소득보전 등) <본문 생략></p> <p>1.~6. <생 략></p>	<p>제8조(농어업 소득보전 등)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남 해 군 공 보

(62) 제 591 호

2017년 10월 25일

<p>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p> <p>8. <생 략></p>	<p>7. 약화</p> <p>8. <현행과 같음></p>
<p>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u>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14조(지원사업 결정)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4장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p>	<p>제4장<삭 제></p>
<p>제17조(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u>남해군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는 <u>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가 대행할 수 있다.</p>	<p>제17조(위원회 설치) ①~②<삭 제></p>
<p>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1. 군 단위 농업인, 어업인 및 소비자</p>	<p>제18조(구성) ①~④<삭 제></p>

<p>단체의 임원</p> <p>2. <u>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u> · <u>회사법인·조합의 임원, 선도 농</u> <u>어업인</u></p> <p>3. <u>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분야 전문가</u></p> <p>4. <u>농수산물의 가공·유통·수출 등의 분야</u> <u>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u> <u>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u> <u>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u> <u>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u> <u>소집한다.</u></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u> <u>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u> <u>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②<삭 제></p>
<p>제20조(분과위원회) ① <u>위원회의 활동을</u> <u>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u> <u>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1. <u>농업정책분과위원회</u></p> <p>2. <u>어업정책분과위원회</u></p> <p>② <u>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u> <u>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u> <u>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u></p> <p>③ <u>분과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u> <u>회를 둘 수 있다.</u></p>	<p>제20조(분과위원회) ①~ ③<삭 제></p>
<p>제21조(수당 등) <u>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u> <u>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 <u>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21조(수당 등) <삭 제></p>
<p>제22조(시행규칙) <생 략></p>	<p>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17 - 100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자 (성 명)	권영수	주소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97 LG유플러스 동부운영담당
소하천명		덕신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43번지		
	면적	0.11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7. 10. 16.~2018. 8. 17.		
	목적 및 사유	통신전주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17 - 100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소로	2	37	8	8	237	8	115	

4. 사업시행자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2017.5.2. ~ 2018.6.30.

6. 공람기간 :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소유권, 편입토지 면적 변동사항 정정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그권리자)
	읍·리	지번				성 명	주 소	
1	서변리	305-1	대	18	18	최0익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74-3	
2	서변리	305-15	잡	2	2	최0익외1인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05-9	최0익(53/464)
3	서변리	306-15	도	119	18	신0숙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06	

남해군 공고 제2017 - 1018호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나. 지원사업(안 제4조)
 - 다. 지원신청(안 제5조)
 - 라. 지원의 제한(안 제6조)
 - 마. 사업의 위탁(안 제7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11월 1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 2). 연락처 : 전화 055-860-8742, 팩스 055-860-87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전화 055-860-8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 좋음 ” 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 녹색등급 ”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또는 경상남도 위생업소협회(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남해군 위생업소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2. 우수업소
3.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4. 제2조제5호의 관련단체
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
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3. 모범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4. 음식문화개선 및 선진외식문화 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생업소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해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생업소의 영업주와 위생업소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